

트리브 창원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 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트리브 창원」 홈페이지(http://www.trivn-doosan-changwon.com)의 입주자 공고문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7.25.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286-088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상남도 창원시 거주자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 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1 공급위치 및 공급규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 23999호(2025.07.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723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27층 6개동 총 434세대
[특별공급 199세대(기관추천 35세대, 다자녀가구 42세대, 신혼부부 79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3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악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 000260	01	084.9719A	84A	84.9719	27.5149	112.4868	51.4703	163.9571	44.3593	213	19	21	48	6	19	113	100	9
	02	084.9782B	84B	84.9782	27.6832	112.6614	51.5501	164.2115	44.3626	136	16	13	31	4	12	76	60	6
	03	107.2774A	107A	107.2774	34.6478	141.9252	64.9405	206.8657	56.0039	44	0	4	0	1	0	5	39	2
	04	107.2774B	107B	107.2774	34.6478	141.9252	64.9405	206.8657	56.0039	41	0	4	0	1	0	5	36	2
	합계									434	35	42	79	12	31	199	235	19

3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25.(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임)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지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창원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8.04.(월)	2025.08.05.(화)	2025.08.06.(수)	2025.08.12.(화)	2025.08.13.(수) ~ 2025.08.22.(금)	2025.08.25.(월) ~ 2025.08.27.(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트리브 창원 견본주택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0-5번지)	• 트리브 창원 견본주택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0-5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당일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필히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천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 ·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적어도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및 창원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및 창원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및 창원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및 창원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악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계약시	계약 후 10일 이내	2025. 11.15	2026. 05.13	2026. 11.13	2027. 05.13	2027. 10.13	2028. 03.13						
84A	102동 3층	1층	3	165,906,880	306,493,120	-	472,400,000	10,000,000	13,62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165,340,000
	103동 3층	2층	9	169,067,680	312,332,320	-	481,400,000	10,000,000	14,07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168,490,000
	104동 1,3층	3~5층	27	172,579,680	318,820,320	-	491,400,000	10,000,000	14,57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171,990,000
	105동 1,3층	6~10층	45	176,091,680	325,308,320	-	501,400,000	10,000,000	15,07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175,490,000
	106동 1,3,4층	11~27층	129	177,847,680	328,552,320	-	506,400,000	10,000,000	15,32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177,240,000
84B	101동 2층	1층	3	165,906,880	306,493,120	-	472,400,000	10,000,000	13,62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165,340,000
	102동 2층	2층	6	169,067,680	312,332,320	-	481,400,000	10,000,000	14,07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48,140,000	168,490,000
	103동 2층	3~5층	18	172,579,680	318,820,320	-	491,400,000	10,000,000	14,57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171,990,000
	104동 2층	6~10층	30	176,091,680	325,308,320	-	501,400,000	10,000,000	15,07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175,490,000
	106동 2층	11~27층	79	177,847,680	328,552,320	-	506,400,000	10,000,000	15,32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177,240,000
107A	101동 2층	2층	2	225,419,953	416,436,406	41,643,641	683,500,000	10,000,000	24,175,000	68,350,000	68,350,000	68,350,000	68,350,000	68,350,000	68,350,000	68,350,000	239,225,000
	101동 1층	3~5층	6	230,103,148	425,088,047	42,508,805	697,700,000	10,000,000	24,885,000	69,770,000	69,770,000	69,770,000	69,770,000	69,770,000	69,770,000	69,770,000	244,195,000
	102동 1층	6~10층	10	234,786,342	433,739,689	43,373,969	711,900,000	10,000,000	25,595,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249,165,000
	104동 1층	11~23층	26	237,127,939	438,065,510	43,806,551	719,000,000	10,000,000	25,95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251,650,000
	107B	2층	2	219,087,747	404,738,412	40,473,841	664,300,000	10,000,000	23,215,000	66,430,000	66,430,000	66,430,000	66,430,000	66,430,000	66,430,000	66,430,000	232,505,000
107B	101동 3층	3~5층	6	223,639,020	413,146,345	41,314,635	678,100,000	10,000,000	23,905,000	67,810,000	67,810,000	67,810,000	67,810,000	67,810,000	67,810,000	67,810,000	237,335,000
	103동 1층	6~10층	10	228,190,294	421,554,278	42,155,428	691,900,000	10,000,000	24,595,000	69,190,000	69,190,000	69,190,000	69,190,000	69,190,000	69,190,000	69,190,000	242,165,000
		11~23층	23	230,465,930	425,758,245	42,575,825	698,800,000	10,000,000	24,940,000	69,880,000	69,880,000	69,880,000	69,880,000	69,880,000	69,880,000	69,880,000	244,580,000

- ※ 본 아파트는 분양(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581201-01-430773	